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April 16, 2021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및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신 세무예규판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3월 30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2019년 대비 2020~2021년은 코로나 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영성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되며,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내실화한 것임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

- 성과 관리체계 개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 확대 등 추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 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함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및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국세청은 21년 3월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여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함.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시행 목적은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준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함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으로,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최신 세무예규판례

상속받은 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해외 자회사 주식이 기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안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이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의 주식가액에 해외현지법인 주식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법인이 실질적으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해외 건설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립되었던 점,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만이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정함(조심2020서1841, 2021. 2. 19.)

이번 심판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가업법인이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해외에 설립한 제조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는 바, 이번 심판례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울행법2016구합80595, 2017. 8. 25., 대법2018두39713, 2018. 7. 1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내국인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함)에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이 아닌 위 내국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이월과세액을 평가대상법인의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과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 6. 14.),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2.4.)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대상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과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및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이 사후관리기간의 경과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과세액이 부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유권해석을 세법해석정비를 통하여 삭제하였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2.27., 재산세제과-397, 2011.8.26. 등)

Korean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Contacts

| | | | |
|---|---|--|--|
|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
|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
|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
|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 이전가격 & 국제통상 헨리 안 (inbound tax) 3781-2594 henry.an@pwc.com |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
|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
|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
|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
|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
|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 정선홍 709-0937 sun-heung.jung@pwc.com |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
|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
|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
|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
|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 |
|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 |
| |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 | |
| |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 | |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